

〈대 담〉

최기원 교수 정년기념 대담

일 시 : 2002년 2월 25일

장 소 : 최기원 교수 연구실

참석자 : 최기원 교수

목영준 부장판사

박상근 교수

목영준, 박상근 선생님께서 2002년 2월말로 36년간의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들로서는 선생님께서 퇴임하시는 것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 오랜 기간 학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큰 업적을 남기시고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정년을 맞이하신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원 우선 정년을 맞이하면서의 느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의 정상에 힘겹게 올라가 짐을 풀고 내려오는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요즘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있으므로 65세는 고령에 속하지 않는다고 기염을 토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과 없이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국내외의 스승의 지도와 선배들과 동료 교수들의 성원, 그리고 훌륭한 강의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동안 본인의 강의에 열성으로 참여해 준 덕택이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상근 선생님께서는 1959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군복무를 마치신 후에 1961년에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

고 독일 유학 4년만인 만 28세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유학을 시작하시면서 전공을 바꾸신 동기, 유학시절의 어려움과 보람 및 것처럼 짧은 기간에 학위를 취득하신 과정 등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기원 195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국내 대학들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부실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동기생들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한 사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점차 유학요건이 강화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유학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유학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1년 군복무를 한 사람이 유학시험에 합격하면 귀휴제대라고 하여 유학을 떠날 수가 있었고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모두 미국으로 유학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평소 본인은 음악을 남달리 좋아하였던 터라 유명한 음악가를 수없이 배출한 독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과대학을 나왔는데 독일에 가서는 상법을 전공하게 된 것은 전공을 바꾼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상과대학의 교육은 상법의 연구를 위한 선수과목의 이수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의 JD(Juris Doctor)과정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듯 상법의 연구를 위해 상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좋은 조건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셈이라고 봅니다.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결혼을 하고 처와 함께 유학을 떠났는데 독일에 가보니 부부유학생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주말이면 한국음식을 그리워하는 유학생들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유학을 가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는 모국에 다니러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전화를 갖고 있는 유학생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도 거의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학위취득을 위한 구술고사를 마치고 학위취득이 확정되었을 때 우편국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것이 유학을 떠난 후 처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독일에 대한 정보가 일본의 문헌을 통해서 다소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였어도 그것은 훨씬 이전의 유명한 교수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 정도였고 그 당시 독일에서 어떠한 교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거의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독일어 연수과정을 마치고 본(Bonn)대학에 입학하면서 교수들에 대한 예비지식이 전혀 없어 대학의 강의안내서(Vorlesungsverzeichnis)에서 상법전공교수를 찾아내어 그 중에 한 교수를 찾아가 지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에 대한 예비지식은 강의안내서에 적혀 있는 간단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간 교수는 민법, 상법, 노동법을 전공하시는 쿠르트 발러슈테트(Kurt Ballerstedt) 교수였습니다. 그 후에 이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게 되었는데 이 분은 본 대학의 법학교수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외국에 가서 지도교수를 정할 때에는 비교적 부드럽고 다소 연세도 지긋하고 친절한 분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예비지식이 없이 들어가서 만난 분이 가장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 다. (웃음) 이 분은 당시 동 대학의 형법의 대가였던 한스 벨첵(Hans Welzel) 교수와 함께 뮌헨 대학으로부터 초빙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본 대학에 남기로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이 횡보행진을 하고 환영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갔으나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4학기 동안의 소정의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고 민법, 형법, 공법 분야의 연습강의의 학점(Übungsschein), 세미나학점(Seminarschein)을 취득하여야 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강의는 들으면 되고 세미나학점은 준비를 하여 발표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연습강의의 학점을 취득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습강의의 학점은 외국인의 경우 한 학기에 한 과목의 학점을 따기도 어렵다고들 하였습니다. 처음 민법연습학점을 따는데 힘이 들었으나 연습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요령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학기에는 형법과 공법 등 2개 과목의 연습학점을 따기로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공법체계가 아주 복잡하여 상당히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했던 과제물을 휴지통에 던지고 학교에 나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그 과제물을 작성하였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내가 휴지통에 던진 과제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급히 귀가하여 휴지통에서

다시 던져버렸던 과제물을 찾아내어 정리해서 제출하여 2과목의 연습학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박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학위를 취득했냐고 물었는데 그때 2개의 연습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위취득기간이 1년은 단축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항상 격려와 공부진행정도를 물어보시던 엄격한 지도교수의 친절하고 따뜻한 지도가 학위취득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혀 예비지식이 없이 찾아갔을 때는 그야말로 학문의 호랑이 굴에 들어간 듯이 섬뜩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연구를 적정한 기간에 마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근 선생님께서는 1966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전임강사가 되셨습니다. 교수가 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수가 되시면서 지키기로 정한 원칙 같은 것이 있으셨는지요?

최기원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도 나만이 독일 유학을 가기로 한 때로부터 나의 앞날의 방향이 예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교수직이 그 어떠한 관직보다도 가장 존경받는 직이고 훌륭한 직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기적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에어하르트(Erhard)는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직위가 부총리임에도 그는 교수 에어하르트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그 나라에서의 교수의 지위는 짐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는 정반대로 교수보다는 관직이 우선하고 교수도 보직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나약한 직으로 대접받는 수준이었는데도 독일 유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직을 선호하는 것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교수가 되면서 지키기로 한 원칙이 있었냐고 하였는데 특별히 정한 원칙은 없었으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독일 교수와 같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로 교수직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영준 선생님께서는 1975년에 서울대 종합화계획에 따라 상과대학의 상법 교수에서 법과대학의 상법교수가 되셨고, 그 당시 법과대학 2학년이던 제가

교수님의 지도반원으로서 교수님을 처음 뵈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시 상과대학과 법과대학의 분위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대학을 옮기신 것이 선생님의 법학자로서의 또한 교수로서의 역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기원 1966년부터 1975년까지 9년간 상과대학의 상법담당 전임교수로 상법을 강의하였고 1975년 3월에 서울대학이 관악산으로 이전하면서 교수들이 전공별로 통합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상과대학은 모교였고 나의 전공은 상과대학에서는 핵심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생활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상과대학에서 학생과장이니 경영대학원의 교무과장이니 또 경영연구소의 소장이니 하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공의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에 따라 법과대학의 교수로 옮기게 된 것은 학문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상과대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화려한 보직교수로서는 성공할 수 있었겠으나 학자로서는 그야말로 정년을 맞으면서 공허한 느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법과대학에 와서는 전국의 수재 중에서도 엄선되어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법과대학은 나의 모교가 아니어서 부실한 강의로는 학생들에게 선배라는 위엄으로 밀고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엄격한 교수님의 은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진지하고 전국의 수재인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대과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법과대학을 거쳐간 무수한 제자들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대학의 학생들은 대학의 후배는 아니었지만 고교평준화가 되기 이전이어서 당시 재학생 중에 4분의 1 이상이 나의 고교동문이었습니다. 이때 법과대학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난 동문이 당시 지도학생이었던 목영준 부장이었습니다. 법과대학에 오면서 강의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상법교재의 집필에 열중하게 된 것입니다.

목영준 선생님께서는 1976년에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에 관한 교과서인 「상법강의(상)」을 출간하신 이래, 회사법과 어음·수표법에 관한 다수의 교과

서를 집필하셨고, 독일 Köln대학에서 2년간 보험·해상법을 연구하시고 귀국하신 후인 1993년에 보험법 및 해상법 교과서를 집필하심으로써 상법 전 분야를 별도의 책으로 완간하셨으며, 그 후에도 계속 개정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연구활동 중에서 특히 교과서 집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최기원 법과대학에 오면서 강의준비를 겸하여 교과서의 집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감히 상사법 전 분야를 망라하여 각론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수로서의 강의와 교재의 집필에만 열중하였을 뿐 다른 활동은 미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외적인 활동이나 보직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였다면 당연히 강의에 충실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현재까지 집필한 저서의 3분의 1도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교재의 집필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의 학생만을 위한 교수에서 한국의 상법교수로서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전국의 학생들을 교재를 통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각론서의 발간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활동에 다소라도 기여한 점을 생각하면 그 동안의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잊게 됩니다. 일전에 동료 교수의 회갑연에서 최근에 대법관직의 임기만료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 나에게 “요즘 선생님의 교재를 사다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변치 못한 저서들이기에 상당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으나 그 날 귀가 길에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서활동을 통해서 비단 전국의 수재와 법관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법교재를 통해서 전국의 경영학 전공 학생이나 전문대, 통신대의 학생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커다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근 선생님께서는 일본 상법학의 소개에 머물러 있던 우리 상법학계에 독일 상법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상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상법학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원 우리에게 일본 상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법이 1962년에 제정되어 196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1950년의 일본 개정상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1945년의 해방과 1950년의 6·25동란을 겪고 난 당시로는 그 이상의 이상적인, 일본법과 차별화된 명실상부한 우리 고유의 상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상법이 1984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지난 기간동안 일본 상법과의 차별화를 위한 진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일본 상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도입된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는 1999년의 일본 상법이 범정한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다시 상법제정 이전의 의용상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놀랄 만큼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경제와는 질과 양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면 일본의 제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따라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개정과정에서는 누구의 의견이든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고 타인의 주장은 마치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하듯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1974년에 주식의 양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한국법학원월보 제27호), 이는 21년 후인 1995년 개정에 의해 비로소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다 일찍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재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침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차 대전 이후 1950년에 미국의 강력한 재벌해체정책의 일환으로 주식양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식의 양도를 완전 자유화하였던 것이고 여기에는 또한 미국 자본의 일본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1962년 무렵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재벌해체를 위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재벌형성을 조장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4년의 대대적인 상법개정에 앞서 당시 독일에 체류하면서 법률신문에의 기고를 통해서(1982. 7. 26. 제1524호) 주식의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의 경제실정으로 볼 때 주식의 대중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주의 금액을 갑자기 크게 인상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주식이 특수층의 투자수단으로 오인되어 국민총화를 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외면당하고 원안대로 1주의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확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6년이 지난 1998년에 1주의 액면가를 50분의 1인 100원으로 개정하는 원칙 없는 연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원수(3인 이상)의 최저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인에 의한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인회사의 설립을 상세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으나(상법개정시안(사안), 1994. 11. 12)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후 7년이 경과한 다음에야 1인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건설적인 의견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뒤늦게 수용됨으로써 복지부동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하여야 될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으로 50분의 1로 인하하였음에도 최저자본금 5천만 원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하여 1천만 원의 창업비만 있어도 창업이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을 하려면 4천만 원의 고리채를 얻어야 하고 수백만 원의 등기비용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모순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2(1998. 12. 30. 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최저자본금을 2천만 원 이상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종류의 업종의 창업을 위하여는 상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기업형태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률개정안의 작성과 국회에서의 심의과정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는 내가 독일 상법의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 상법학의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하셨는데 5권의 각론서를 집필하면서 독일의 문헌과 판례를 참조하여 가급적 그 내용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독일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도 독일 상법학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독일 상법학의 연구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깊은 연구는 박 교수와 같이 독일에서 상법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목영준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법학이론과 실무와의 밀접성을 강조하여 주셨고, 선생님 스스로도 많은 판례평석을 하셨으며, 상법분야 판례평석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사판례연구」를 5권까지 발간하도록 주관하셨습니다. 또한 2000년에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는 “상사법무연구회”를 창립하시어 정기적으로 상사판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계속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이론과 실무의 관련성과 상호보완적 성격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기원 법학 중에서도 상법분야는 그야말로 산학협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적회사에 관한 법규는 강행법규의 성격에 의하여 기업경영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도 기업실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규의 결함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줌으로써 굳이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판례가 실질적인 입법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음법, 수표법은 국제조약에 기한 법규로서 법규에 결함이 있더라도 유보조항이 없는 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보완이 불가능한 분야이므로 판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판례는 장래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법규의 결함을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경직된 문리해석만을 되풀이함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개정에 의하여 판례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상법 335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도 과거 맹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되풀이하였으나 1972년에 최고재판소의 대법정 판결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

사가 주권의 발행을 부당하게 지체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상황에 이른 때에는 주주는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회사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법개정이 없이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판례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법원의 무리한 판결에 대하여 무리한 법개정으로 맞대응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법개정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즉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때에는 주권 없이 한 주식양도는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주권은 6월내에만 발행하면 된다는 어차피 6월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주식양도가 가능하게 되므로 구태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조장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판례에 의하여 법개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법원에 판사들에 의한 판례연구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학계의 판례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사판례는 희소했던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1977년에 후암 박윤직 교수님의 주도로 민사판례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법원의 판사와 학계의 교수들이 함께 판례를 연구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적어도 사법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의 협동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상사법 분야의 판례가 급격히 양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은 상사법 판례가 회사법, 보험법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전에 김건식 교수와 목영준 부장, 김용덕 부장 등이 나의 집에 찾아와 본인의 회갑을 기념하여 논문집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간곡하게 사양한 바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의 회갑을 기념한다기보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50년간의 상사판례 중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상사판례평석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당시 편집위원 김성태 교수, 김건식 교수, 목영준 부장, 김용덕 부장, 권순일 부장 등이 중심이 되어 상사판례연구 1, 2, 3권의 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 부장판사는 상사판례연구 다섯 권을 모두 내가 주관하였다고 했는데 1, 2, 3권에는 그 동안 발표한 나의 판례평석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편집위원

다섯 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4, 5권은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면서 모아온 원고들과 일부 청탁에 의하여 집필된 원고들을 모아서 발간된 것입니다. 현재 상사판례연구는 6권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평행선으로 질주하던 이론과 실무가 이제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여 법률문화의 장을 도모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근 선생님께서는 오랜 교수생활을 통하여 항상 자상하시고 사려깊은 가르침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이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도 함께 해 주십시오.

최기원 이전에 목 부장판사가 고시공부를 할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생들이 고시학원에 다닌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학의 정규수업이 외면당하고 고시학원 강의의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사람이 사법시험에 있어서도 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원에 가는 심정은 마치 모든 일에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 점술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즉 학원에서의 교육은 비정상적인 교육이 아닐 수 없고 앞으로 시험제도가 개선되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이면 야망과 자부심을 갖고 정도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년 전부터 법과대학에서는 사은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면서 법조인이 된다고 한다거나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재삼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조출하고 다정한 사은회가 법과대학에서 부활되었다는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목영준 선생님께서는 학창시절에 성악과 첼로 연주를 하시는 등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고, 고서화 등 미술 분야에도 깊은 조예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취미활동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기원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여 1948년경, 그 당시는 TV는 물론 없었고 녹음방송도 이루어지지 않고 라디오 방송이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던 때였는데, 당시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 저녁 어린이 시간에 수차 독창을 한 바 있고, 경기고등학교에서는 합창반의 반장으로 월요일 조회 때에는 애국가 제창을 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합창단을 조직하여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악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수에게 개인지도를 받았고 첼로는 대학에 들어가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첼로 주자가 희귀했던 때라 배운 지 얼마 안되어서 시립교향악단의 전신인 해군정훈음악대 오케스트라의 첼로 주자로 1956년에 동남아연주여행에 참여했고 1957년에는 새로 창립된 방송교향악단의 첼로 주자로 동남아연주여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19 직후에 독창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독일로 유학을 간 것은 음악을 좋아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떠나서 상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음악과는 결별하였습니다. 고서화 등에 대하여 조예가 있다고 하셨지만 고서화는 그저 좋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박상근 이제 36년 동안 몸 담으셨던 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기원 대학과정 4년을 포함하면 서울대학교에 40년간 몸을 담고 있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휴식기간을 거친 다음, 이제 강의 등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므로 지난 기간 중에 발간한 교재들과 논문들을 재정리,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영준, 박승근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질문에 자상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제자와 후학들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학문하는 태도와 교수의 품격, 그리고 법률가의 자세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큰 본보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연구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